

Every athlete has a right to clean sports.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지도자의 역할

The coach's role in anti-doping





비바람이 거세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이  
더 푸르게, 더 튼튼하게 커가는  
대한민국 스포츠,  
그 중심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The coach's role in anti-doping



## 지도자의 의무와 책임

지도자는 선수들을 위하여 훈련환경 조성,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 개인 컨디션 조절 등 수많은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력과 관련된 이러한 수많은 요인들뿐만 아니라 도핑방지활동과 같은 경기력 외적 요인들도 지도자가 관리하고 지도해야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에 해당된다. 선수와 지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긴 시간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쌓아 온 명성과 자부심이 아주 작은 부주의와 무지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수는 선수로서 도핑방지활동에 대한 몇 가지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 지도자는 선수를 위하여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선수가 도핑검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갖게 되는 다양한 의무와 권리 중 몇 가지의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선수는 도핑검사과정 중에 그들의 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지도자도 선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도핑검사를 진행하는 도핑검사관 또는 혈액채취요원들의 자격여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장애를 가진 선수일 경우 선수가 가진 장애에 따른 검사과정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더불어 선수는 일정한 책임도 함께 부여받는다. 선수는 도핑검사 과정 중에 시상식, 의료적 처치, 후속경기 참여 등으로 검사실 도착 지연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를 도핑검사관에게 명확히 언급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조율 할 책임을 가진다. 또한 검사의 진행을 위해서 검사대상 선수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사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수가 훈련 및 대회 참여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항상 주지시켜야 한다. 도핑방지규정으로 정하는 좀 더 상세한 선수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www.kada-ad.or.kr/page/200c00](http://www.kada-ad.or.kr/page/200c00))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소변시료 채취

선수가 도핑검사관으로부터 검사대상자로 소변시료제공을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시료 제공 시점까지 항상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 소변시료 제공 시에는 선수와 동성의 도핑검사관 또는 입회사프롱이 시료채취실에 동반하여 시료 제공과정을 직접 확인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www.kada-ad.or.kr/page/100f01](http://www.kada-ad.or.kr/page/100f01))를 통해 보다 더 상세한 소변시료 채취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 혈액시료 채취

선수는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으로부터 소변시료가 아닌 혈액시료제공을 요구 받을 수 있다. 이때 제공되는 혈액의 양은 매우 적은 양이므로 지도자는 선수가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단, 선수가 채혈에 대한 심리적 질환이나 채혈도구에 대한 쇼크 증상, 혈액응고 장애 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전에 혈액채취요원에게 고지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선수는 혈액시료제공 전 휴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핑검사관은 적정 시간의 휴식을 제공한다. 보다 상세한 혈액시료채취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www.kada-ad.or.kr/page/100f02](http://www.kada-ad.or.kr/page/100f02))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18↓ 미성년 선수의 시료채취

만약 선수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선수라면 지도자는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수 대리인으로 도핑검사의 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선수가 시료채취과정에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도핑검사관이 승인한다면 지도자는 시료채취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 금지목록 국제표준

전세계의 도핑방지활동을 관장하고 조율하는 WADA는 최소 연 1회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개정하여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WADA의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포함되는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은 다음에 언급하는 3가지 요인 중 2가지 이상에 부합되는 것들이다.

- 잠재적 또는 직접적으로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때
- 즉각적 또는 잠재적으로 선수들의 건강에 위해하는 요인이 될 때
- 스포츠정신을 저해할 때

## 금지약물 검색서비스

지도자 또는 선수가 매년 변경되는 금지목록 국제표준의 정보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의약품의 정보를 파악하여 금지약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개정되는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승인한 의약품의 정보와 비교하여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금지약물검색 시스템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시판 되었거나 시판 중인 약품만 검색이 가능하다.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해 [www.kada-ad.or.kr/page/100c01](http://www.kada-ad.or.kr/page/100c01) 로 접속하면 된다.

만약 선수가 해외 훈련이나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방문하여 의학적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각국의 도핑방지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복수의 국가가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웹페이지 ([www.globaldro.com](http://www.globaldro.com))를 이용하면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금지약물검색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02)2045-9843** 로 연락하면 담당자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및 처리과정

선수는 일상적인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장시간·고강도 훈련으로 인한 신체적 이상,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접촉성 또는 비접촉성 부상 등 일반인들 보다 더 많은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의료적 처치과정 중에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선수는 치료목적 사용면책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 의료처치 및 약물 복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

선수가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는지를 아래 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1. 선수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약물을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www.kada-ad.or.kr/page/100c01](http://www.kada-ad.or.kr/page/100c01)
2. 금지약물로 검색될 경우, 대체약물 처방이 가능한지 의료진과 논의
3. 대체약물의 처방이 불가능하다면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대회를 앞두고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 대회시작 30일전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4.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의 모든 내용을 의료진과 함께 빠짐없이 기재하고  
진단관련서류(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를 첨부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접수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승인되면 선수는 승인되는 약물과 사용법, 사용 기간 등이 명시된 치료목적사용 면책 승인서류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치료목적사용면책이 거부된다면 선수는 항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선수가 응급 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의료적 처치를 받게 된다면 선수는 본인이 받은 모든 의료적 처치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최대한 빨리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여야 한다.

## 소재지정보제출

선수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소속 국제연맹의 소재지정보제출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도자는 해당 선수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확인하여 선수가 소재지정보제출대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선수가 소재지정보제출대상자가 되었음을 통지를 받게 되면 선수는 매분기별 자신의 거주지, 훈련장소 및 경기 장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정확한 소재지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을 통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분기 동안 각 일자별로 특정 60분 단위시간(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사이)과 지정된 특정 60분 단위시간동안 검사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소재지 정보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소재지정보 입력기한 및 적용기간

분기	입력기한 (마감일)	적용기간
1	12. 31	1. 1 ~ 3. 31
2	3. 31	4. 1 ~ 6. 30
3	6. 30	7. 1 ~ 9. 30
4	9. 30	10. 1 ~ 12. 31

소재지정보를 입력 후 훈련 또는 경기 일정의 변화로 특정 60분 단위 시간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ADAMS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소재지정보제출 대상 선수는 12개월 동안 총 3회의 검사불이행 또는 제출 불이행 발생 시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결과관리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를 통해서 발생한 시료의 양성반응 또는 기타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하여 제재관리를 진행한다.

만약 선수에게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하였다면 도핑방지기구는 선수에게 서면으로 도핑방지규정위반을 통지한다. 선수의 청문회 및 제재를 위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청문위원회와 제재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들은 청문절차를 통하여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과된 제재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선수는 물론 관계된 도핑방지기구들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는 선수의 경기력 수준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항소위원회 또는 스포츠중재판소로 제기할 수 있다.

- 결과관리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www.kada-ad.or.kr/page/200d00](http://www.kada-ad.or.kr/page/200d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내 손안의 도핑방지!

도핑방지 앱에서 **도핑사전예방활동**을 무료로 이용해보세요.

## 모바일 어플 사용방법

